

추 가 약 정 서

(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유니온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(인)

주 소 :

채무자는 유니온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1조(목적) 이 약정서는 세대^{주1)}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 대상지역 또는 수도권 소재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하며, 주택담보대출 실행일(중도금 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)로부터 **6개월 이내**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**전입**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주1) “세대”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,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(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 및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)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.

제2조(전입 대상 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3조(전입 의무)

- ①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제2조의 구입 대상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.
-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, 즉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제4조(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구입 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
제5조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2)} 주택 관련 대출^{주3)}이 제한됩니다.

주2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3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(다만, 주택이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 등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등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) 이내에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2.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